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2007. 11. 26

발 의 자 : 강성국 위원외 6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8423호, 2007.5.11 공포시행)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0306호, 2007.10.4 공포·시행)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규정에 맞게 조정함.
(안 제1조, 안 제4조, 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, 제47조, 제41조, 제134조, 제127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입법예고 : 생략

라. 협의사항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, 제4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, 제47조”로 하고, “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9조의4”를 “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4조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영 제19조의4”를 “영 제54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36조제1항”을 “법 제41조제1항”으로 하고, “법 제125조”를 “법 제134조”로 하며, 동조 제2항 중 “법 제118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,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정례회의 집회일)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.</p> <p>1. 2.(생략)</p> <p>제5조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,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4조-----</p> <p>-----</p> <p>제4조(정례회의 집회일) 영 제54조-----</p> <p>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심의) ①-----</p> <p>-----법 제134조-----</p> <p>-----</p> <p>②-----법 제127조-----</p> <p>-----</p>